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



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명문 사립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전략

미국 대학은 편입이 매우 일반적이다. 전체 미국 대학생의 1/3이 편입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옮기거나 2년제 CC에서 4년제 대학으로 옮긴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은 정말 어렵다. 편입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사립대에 편입할 수 있는 확률은 신입생으로 합격할 확률보다 낮다. 그러므로 명문 사립대로 편입을 꿈꾼다면 전략을 잘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 (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대학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 어떤 대학들이 편입생을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권 명문대로 편입에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은 재학중인 대학에서의 성적을 높여야 한다. 설사 재학중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노린다면, 무조건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교수의 추천서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강의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오피스를 방문해 교수와 이런 저런 토직으로 자주 대화를 나눴거나 도움을 청했으면 추천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명문 사립대학들은 편입 지원서도 에세이를 요구한다. 에세이를 통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도록 신경 쓴다. 목표로 삼은 대학이 왜 나에게 '적합' (fit) 한 학교인지, 내가 그 대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타겟 스쿨의 아카데믹 명성과 돋보이는 다양성, 낮은 교수 대 학생 비율, 재학생의 높은 인턴십 참여 비율 등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 가



▲ Princeton University. 사진=shutterstock

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유명한 교수 이름을 대며 그 교수의 연구 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거나, 교내 스포츠·예술활동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입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학교 측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대학에 긍정적인 이유를 대며 편입 의지를 전달한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이 '안 좋다'는 식의 이유는 원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참고로 2018년 주요 명문 사립대학의 가을학기 편입률을 소개한다. 시간이 좀 경과한 자료이지만 편입률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편입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명문 사립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Princeton University(0.9%), ▶ Harvard College(1%) ▶ Dartmouth College(1.5%) ▶ Yale University(1.8%) ▶ Stanford University(1.1%)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1.9%) ▶ MIT(4.3%) ▶ University of Chicago(5.4%) ▶ Brown University(7.7%) ▶ Columbia University(6.1%) ▶ Duke(6.6%) ▶ Johns Hopkins University(9.4%)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24.6%)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